< 조사보고서 07-007 >

중국의 가공무역금지조치 확대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

2007. 4. 5

한국무역협회
(상해지부)

1.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확대

o 중국 상무부, 해관총서, 환경보호총국은 지난 4월 5일 <2007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목록>을 발표하고 오는 4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함

- 가공무역을 금지대상품목은 1,140개 (HS Code 10단위 기준) 품목으로 종전 804개 보다 336개 증가

  ＊ 중고전기제품을 제외할 경우 실제 가공무역 금지대상은 990개임

- 이번 금지대상 품목 조정 시 사무용 가구 등 상당 수 가구류 (HS Code 90류)에 대한 기존 가공무역 금지 조치를 해지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목재제품류에 대해 확대

  ＊ 이번 가구류에 대한 대대적인 해지조치는 대만계 기업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여겨짐

- 중국내 자원보호를 위해 일부 비철금속과 천연자원제품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 조치도 확대

【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류 및 품목수】

① 뼈와 뿔, 산호 등 동물성 생산품 : 31개
② 서양 인삼, 과일 및 사탕수수 등 당류 : 4개
③ 음료수, 광산품,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제품 : 280개
④ 약품 및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: 70개
⑤ 목재와 그 제품 및 코르크와 그 제품 : 405개
⑥ 석재제품, 양모, 면 폐기물, 합성섬유 폐기물 등 : 18개
⑦ 섬유제품, 석고 및 역청, 일부 도자기제품 등 : 11개
⑧ 동, 니켈, 알루미늄, 연, 아연, 주석 등 비금속과 그 제품 : 171개
⑨ 중고전기제품 등: 150개

2. 조치 배경

□ 무역흑자 확대 억제

o 중국은 지난해 1,775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, 금년 들어서도 이미 2월 말 현재 39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무역 수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

-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무역흑자를 줄여 통상 마찰을 완화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외화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 완화 필요

<중국의 무역흑자 추이>

(단위: 억달러, %)

	수출	수입	수지	무역흑자 증가율
2004년	5,936 (35.4)	5,608 (35.8)	328	29.1
2005년	7,623 (28.4)	6,602 (17.7)	1,021	211.3
2006년	9,693 (27.2)	7,918 (19.9)	1,775	73.8
2007년 (1-2월)	1,687 (41.7)	1,291 (20.4)	396	232.7

자료: KITA 중국통계, 주: ( )은 전년대비 증가율

□ 자원보호와 환경오염 방지

o 중국은 최근 발표한 일련의 가공무역금지 품목들을 가공수준이 낮고, 高오염, 高자원에너지소모 위주로 선정하였다고 밝혀 자원보호와 환경오염 방지가 주요 배경임을 공식적으로 표명

- 중국은 이미 2005년말부터 환경 보호를 국가 경제 발전 방향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

□ 중국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

o 중국에서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한계 기업을 정리하고 중국의 산업 구조를 다국적 기업의 단순 임가공 공장 형태에서 벗어나 첨단화, 고도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

- 국무원은 이미 지난해 3월 '생산능력 과인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'를 발표한 바 있음

<참고: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정책 추이>

o (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목록<2005년 제105호 공고>) 2005년 12월 21일 발표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,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확대

o (일부제품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금지품목 확대에 대한 통지 <2006년 제139호 통지>) 2006년 9월 14일 발표하고 2006년 9월 15일부터 실시, 증치세 환급율 취소, 인하, 조정 및 금지 품목 목록 확대

o (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목록<2006년 제82호 공고>) 2006년 11월 1일 발표하고 2006년 11월 22일부터 실시,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 확대

o 2007년 가공무역 금지류 품목 목록<2007년 제17호 공고> 2007년 4월 5일 발표하고 2007년 4월 26일부터 실시

3.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

□ 대한국 수출 업체에 대한 영향

o 중국의 대한국 수출 중 가공무역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비중이 40%대이나, 이 중 지난해말 발표된 금지 품목의 대한국 수출 비중은 5%이하로 추정됨

- 이번에 추가 및 조정된 품목이 지난해 발표한 품목과 비슷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보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

<최근 한·중간 무역방식 추이>

(단위 : 억 달러, %)

	무역형태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 (1-6월)
중국의 대한국 수출	총 액	201.0(100)	278.2(100)	351.1(100)	210.0(100)
	일반무역	108.6(54.0)	140.9(50.6)	186.6(53.1)	118.3(56.3)
	가공무역	92.5(46.0)	137.3(49.4)	164.5(46.9)	91.7(43.7)
중국의 대한국 수입	총 액	431.6(100)	622.5(100)	768.2(100)	417.0(100)
	일반무역	206.9(47.9)	274.5(44.0)	314.0(40.9)	180.5(43.3)
	가공무역	207.4(48.0)	320.3(51.5)	428.9(55.8)	225.1(53.9)
	투자설비	17.4(4.1)	27.9(4.5)	25.3(3.3)	11.4(2.7)

주1) ( )은 전체 수출입에서의 비중, 2006년은 1-6월 기준 자료: 중국해관
2) 일반무역은 가공무역(진료가공, 래료가공, 투자설비)을 제외한 모든 금액

<참고: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의 차이>

o 일반무역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 및 수입증치세를 납부하고 완제품 가공·수출 후 환급 받으며 가공무역시 관세 및 수입증치세 납부를 유예한 후 완제품 가공, 수출 후 정산

(가공무역업체가 일반무역을 할 경우 5%내외의 금융부담 발생)

□ 중국 현지 투자진출업체의 대응방안

o 현지 한국 기업의 경우 가공무역이 IT 및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금지대상품목을 수출입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

o 이번에 금지대상품목을 수출입하는 업체의 경우 다음의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

- 해관 당국 등 관계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, 교섭 등을 통해 수출입대상품목의 HS Code를 비금지대상품목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처할 필요가 있음

- 가공도가 낮은 원자재를 수입해 중국 현지에서 가공도를 높이고, 가공도가 낮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가공도를 높여서 수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

-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수입해 오는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대체해 조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거나, 중국 현지의 공급선을 미리 파악해서 중국 정부의 조치 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/.